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8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의 근거규정을 “법 제7조제2항”에서 “법 제7조제3항”으로 변경 (안 제3조제1항)
- 나.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하는 자원 재활용실행계획의 근거규정을 “시 조례 제3조”에서 “법 제7조제4항” 변경 (안 제3조제2항)

III. 검토의견

- 경제규모의 확대와 대량생산, 대량공급 체제에 따른 물량 증가와 소비자들의 다양한 구매욕구 등으로 각종 생활폐기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폐기물의 최종처리장 부족 등 쓰레기처리 및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이 제정(1992. 12. 8, 법률 제4538호)된 바 있으며,

이후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와 재활용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면서 2002년 2월 4일 등 법률 전문개정(법률 제6653호)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단계에서부터 억제하기 위해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생산·유통·소비의 각 단계마다 폐기물의 재생 및 배출 억제, 감량화, 재생품의 이용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재활용체계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종로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1994. 4. 18)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위 법률의 개정(2002. 2. 4, 2003. 12. 30)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참고적으로 2003년 12월 30일 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조제4항의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구청장의 자원재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던 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구청장이 수립하는 폐기물처리기본계획에 폐기물의 감량화와 재활용 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폐기물 관리의 일차적인 책임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향후 우리구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분리수거 등)업무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IV. 관계법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 7023호)

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개정 2003.12.30>) ①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 등 자원재활용여건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목표를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투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전문개정 2002. 2. 4]

※ 전문개정(2002. 2. 4)전 조문내용(법률 제6590호)

제7조 (자원재활용계획의 수립)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일부개정(2003.12.30)전 조문내용(법률 제6653호)

④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의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각 자치 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